

업계소식-2016 년 9 월 1 일-영업장 점검의 방해와 거부

이미용위원회에서 시설 소유주와 개인 면허소지자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영업장 점검의 방해와 거부는 징계 처분과 행정 벌금의 사유입니다.

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업법 (CBPC) 7404 (I)에 따르면,

징계 처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(I) 이 장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영업장 점검에 대한 거부와 방해 행위

위원회는 영업 시간 중 또는 서비스가 시행되는 시간 중 어느 때라도 영업장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. (CBPC 7313 항 (a)(1)).

영업장 점검의 방해와 거부는 위반 행위이며, 소환장 발부와 \$200-\$500 의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면허 소지자 역시 영업장 점검의 방해와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